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2 선고 2021재가단29 판결 [지상권 소멸 및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A

피고(재심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2.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375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거제시 C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75㎡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다용도실,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조적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별지 도면 표시 16, 17,

20, 21, 22, 23,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40.5㎡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5.75㎡ 지상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별지 도면 표시 16, 23, 24, 2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9㎡ 지상 판넬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거제시 C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61㎡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8.75㎡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다용도실,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3㎡ 지상 조적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별지 도면 표시 16, 17, 20, 21, 22, 23,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40.5㎡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5.75㎡ 지상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별지 도면 표시 16, 23, 24, 2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9㎡ 지상 판넬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에 가지고 있는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3375호로 지상권 소멸 및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9차116 지급명령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해당함에도 증거로 채택되거나 원고의 허위 주장만 받아들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유의 존부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